

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4-114호

신내동 493-1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493-1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40조 등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.11.21.

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 : 가로주택정비사업

나. 명 칭 : 신내동 493-1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493-13번지 일대

나. 면 적 : 9,011.9㎡

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

가. 착수 예정일 :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4개월 이내

나. 준공 예정일 : 미정
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가. 명 칭 : 신내동 493-1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

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493-25, 동우빌딩 2층

5. 변경내용

- 조합정관 변경

- 조합원 변경

6.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

